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국토교통부지정]

〈 대전교육 안내 〉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6.24), 제2011-322호(11.6.23), 제2013-345호(13.6.21)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후 약 8,000여명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 8. 8(금), 8. 9(토), 8. 15(금), 8. 16(토), 8. 22(금), 8. 23(토), 8. 29(금), 8. 30(토)
* 교육시간 : 09:30~18:00 / 필요시 일부조정
2. 교육장소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신관 3층 50349호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오정동 133))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육비 : 1인당 85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업계·전문가 등 70여명의 강사진
 - '08~'13년 5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60%이상인 협회 수료자임
(2013년도의 경우 94%이상 협회 교육 수료)
 -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 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취업정보 등)
 -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교육비 입금계좌 : 630-006423-197(외환은행, 한국부동산개발협회)
7. 교육과정 : 10개 과목 60시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
*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 관련 공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분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동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8. 서류제출 및 문의 : 02-512-4750(대표), 02-512-4752(Fax) / 017-331-3065(이경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1. 부동산개발업 등록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면허) : '07. 11. 1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법 제4조제①항, 영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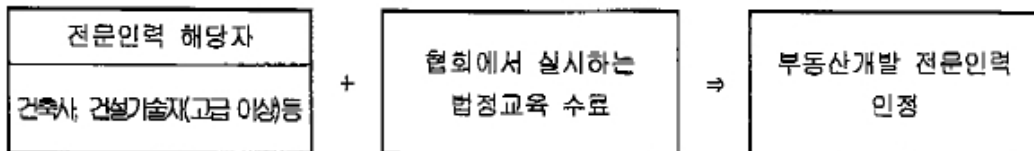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2.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법 제4조제②항, 영 제4조)

구 분		등 록 요 건
자 본 금	법 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 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 설		사무실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법 제5조, 영 제9조)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절차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세한 범위 별첨참조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 의무(영 제10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253호(08. 6. 24), 제2009-396호(09. 6. 24), 제2011-322호(11. 6. 23), 제2013-345호(13. 6. 21) 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60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영 별표1,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3조~제11조)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신청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인 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로서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법인(개인사무소)의 예시 :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건설업자, 건설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 ※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법인(개인사무소)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최근 5년 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관련분야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의 10개학과와 그외에 국립대학에 개설된 10개동원학과의 전공필수과목중 16개과목(48학점)을 이수한 경우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 일반직 5급(7급)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재도의 수립, 운용, 인가 등에 관한 업무에 3년(5년)이상 경력자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발관련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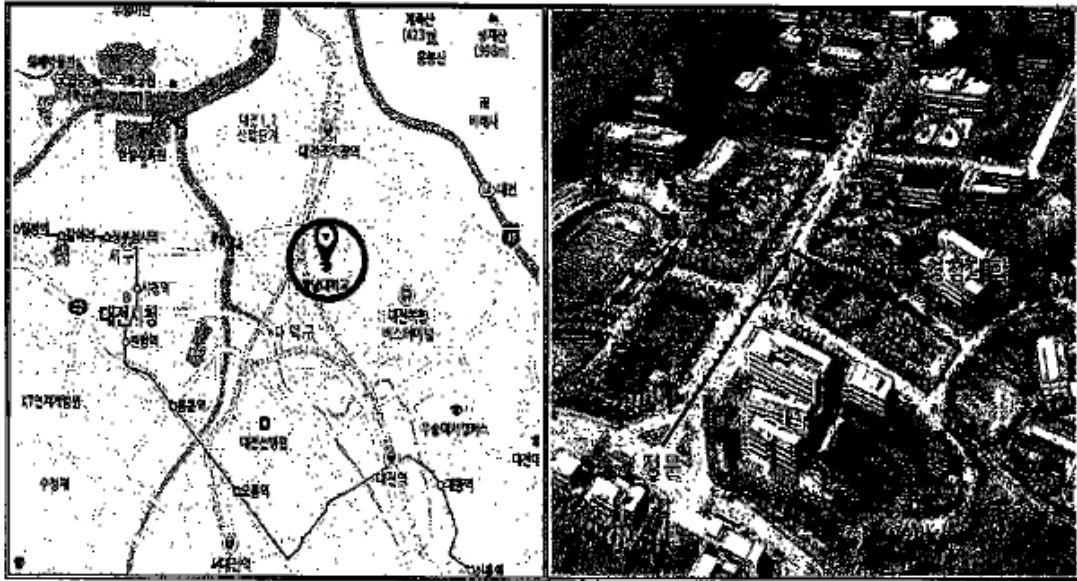
구분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산매출증명서
1. 자격자			
변호사	변호사등록증 사본	법률사무종사경력증명서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종사경력증명서 (3년 이상)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자격증 사본	1. 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건축사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2. 학·석사 학위자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1. 개발업법인등 경력증명서 (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3. 실무 경력자			
금융기관		은행(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국가·지자체		경력증명서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지방공사·지방공단		경력증명서(소정양식)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서				
① 성 명				사진 (3.5cm×4.5cm)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직 장 명				
⑤ 연 락 처				
⑥ 희망교육일시				
⑦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해당 범위	자격자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사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input type="checkbox"/> 법무사, 세무사 <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자(□기술사)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전문인력		
	학·석사학위 경력자	<input type="checkbox"/> 학사학위 경력자 <input type="checkbox"/> 석사학위 경력자		
	실무경력자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input type="checkbox"/> 국가·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공사·지방공단		
⑧ 면제대상확인 및 면제신청과목				
면제 대상 확인	<input type="checkbox"/> 공인회계사 <input type="checkbox"/> 건축사 <input type="checkbox"/> 공인중개사	면제 과목 신청	적용가능대상	공인중개사·건축사 : 공법 공인회계사 : 조세 및 회계
<p>상기 본인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귀하</p>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교육 면제대상 : 면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한 남 대 학 교 약 도



교통 안내	
교통별	목적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기차	○ 대전역에서 하차 (차로 10분 소요, 약 3Km)
버스	○ 105, 314, 711번 (한남대학교 정문앞 정류장 하차) ○ 512번 (한남대학교 정류장 하차 후 한남대 목교 경유) ○ 102, 605, 611, 706, 802번 (한남대 북문 정류장 하차)
고속버스	○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하차 (도보로 20분 소요, 약 2Km)
자가용	○ 대전IC→동부사거리 직진→용전사거리 직진→NH농협은행(홍도동지점)서우회전→한남로삼거리 좌회전→한남대학교 정문

♣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133번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신관 3층 50349호

♣ 문 의 : 02-512-4750 (협회 / 이경수 사무국장, 017-331-3065)